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국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1606

발의연월일: 2023. 4. 24.

발 의 자:김남국・이장섭・양정숙

박상혁 • 이개호 • 위성곤

임호선 • 유정주 • 민형배

김철민 · 이학영 의원

(119]

제안이유 및 주유내용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강화하는 '윤창호법'이 시행되었는데도 여전히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는 반인륜적 범죄가 줄어들지 않고 있음.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경찰이 적발한 음주운전자 수는 약 73만명으로 하루 평균 약 400명이 음주운전을 하는 것으로 추산되며, 음주운전으로 매년 200여명이 사망하는 등 음주운전으로 인한 폐해가 심각한 실정임.

또한 음주운전은 재범율이 40%에 이를 정도로 동일 인물에 대한 재발생율이 높은 범죄임. 음주운전 경력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의 운전을 시도할 경우, 이를 감지하여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음주운전방지장치의 도입과 함께 음주운전으로 인한 결격기간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본 법안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면허의 정지 또는 취소를 받

은 사람이 다시 운전을 할 경우, 법원이 선고한 일정 기간 동안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시동이 걸리지 않게 하는 음주운전방지장치를 설치한 자동차등만 운전하도록 하고 면허 결격기간을 최대 10년까지로 늘려 음주운전의 심각성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폐해를 줄이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2 신설 등).

법률 제 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항 중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를 "제44조의2,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93조제1항제3호의2, 제93조제1항제4호, 제148조제1호, 제148조의2 및 제152조제1호의2"로 한다.

제4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의2(음주운전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의 운전 의무) ① 법원은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그 효력이 정지된 사람에게 3년 이상 5년 이하의 범위에서 음주운전방지장치(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는 경우 이를 감지하여 시동이 걸리지 아니하도록 하는 장치를 말한다)가 설치된 자동차등을 운전하도록 하는 명령을 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법원의 선고를 받은 사람이 다시 운전면허를 받거나 효력 정지 기간이 종료되어 운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선고 기간 동안 음주운전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만을 운전하여야 한다.
- ③ 음주운전방지장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운전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국가가 그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음주운전방지장치의 설치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2조제2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5년"을 "10년"으로 하고, 같은호 가목 중 "제44조, 제45조 또는 제46조"를 "제44조"로 하며, 같은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제44조제1항또는 제2항을 위반(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한다)하여 운전을 하다가 2회 이상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에는 기반한 날을 말한다)부터 3년, 자동차등을"을 "자동차등을"로 하며,같은 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6호가목 중 "2회 이상 위반"을 "위반"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을 삭제한다.

- 3의2.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제43조 또는 제 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을 말한다)부터 5 년
 - 가.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3회 이상 위반(제43조 또는 제96조 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
 - 나.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한다)하여 운전을 하다가 2회 이상 교 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다. 제45조 또는 제46조를 위반(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한다)하여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사상한 후 제5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및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5의2.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제43조 또는 제 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을 말한다)부터 3 년
 - 가.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제43조 또는 제96조 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
 - 나.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한다)하여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제9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2호"를 "제1호, 제2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제44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의2. 제4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운전방지장치가 설치되지 아 니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 제14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4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44조의2에 따라 음주운전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만을 운전

하여야 하는 기간 중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

2.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

제148조의2제3항제1호 중 "2년"을 "3년"으로 한다.

제152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44조의2를 위반하여 음주운전방지장치가 설치되지 아니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전면허 결격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8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다.

신·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 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 전 금지) ① -----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 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 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 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 제44조의2. 제45조. 제47조. 제93 조제1항제1호<u>부터</u> 제3호까지, 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 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제93조제1항제3호의2, 제93조제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1항제4호, 제148조제1호, 제148 조의2 및 제152조제1호의2----된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4조의2(음주운전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의 운전 의무) ① 법원은 제44조제1항을 위반 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그 효력이 정지된 사람에게 3 년 이상 5년 이하의 범위에서 음주운전방지장치(운전자가 술 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는 경우 이를 감지하

여 시동이 걸리지 아니하도록 하는 장치를 말한다)가 설치된 자동차등을 운전하도록 하는 명령을 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 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법원의 선고 를 받은 사람이 다시 운전면허 를 받거나 효력 정지 기간이 종료되어 운전을 하려는 경우 에는 선고 기간 동안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만 을 운전하여야 한다.
- ③ 음주운전방지장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운전자가 부 담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저소득층의 경우 에는 국가가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④ 그 밖에 음주운전방지장치 의 설치 기준 및 방법 등에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 (현행과 같음)
- 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① 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① (생 략)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②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 로 인하여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되거나 선고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또는 기소유예나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보 호처분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 는 각 호에 규정된 기간 내라 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다.

- 1. 2. (생략)
- 3.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운전 면허가 취소된 날(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을 말한다)부터 5년
 - 가. 제44조, 제45조 또는 제4
 6조를 위반(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 한 경우도 포함한다)하여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사상한 후 제5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및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나.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0.
<u>10년</u>
 가. <u>제44조</u>
/ · <u>/ </u>
나. (현행과 같음)

<신 설>

- 3의2.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운전면허가 취소된 날(제43조)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을 말한다)부터 5년
 - 가.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3회 이상 위반(제43조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위반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
 - 나.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한다)하여 운전을 하다가 2회 이상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다. 제45조 또는 제46조를 위반(제43조 또는 제96조제3 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한다)하여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사상한 후 제5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및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4. (현행과 같음)
- 5. <u>자동차등을</u>-----

- 4. (생략)
- 5. <u>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u>

위반(제43조 또는 제96조제3 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 함한다)하여 운전을 하다가 2회 이상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 을 함께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을 말한다)부터 3 년,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범 죄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 의 자동차등을 훔치거나 빼 앗은 사람이 제43조를 위반 하여 그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부터

<신 설>

5의2.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운전면허가 취소된 날(제43조)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을 말한다)부터 3년

가.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제43조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위반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

나.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

- 6.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운전 면허가 취소된 날(제43조 또 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 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을 말한다)부터 2년
 - 가.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 을 2회 이상 위반(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한다) 한 경우
 - 나.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 <삭 제> 을 위반(제43조 또는 제96 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 우도 포함한다)하여 운전 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 으킨 경우

다. • 라. (생 략)

7. ~ 9. (생략)

③ (생략)

시·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연습

<u>-전</u> 일
일

을 위반(제43조 또는 제96

다. • 라. (현행과 같음) 7. ~ 9.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정지) ①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정지) ①

운전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 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운전 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 허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 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 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 <u>2호</u>, 제3호, 제7호, 제8호, 제8 호의2, 제9호(정기 적성검사 기 간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제14호, 제16호, 제17호, 제20호 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하고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취 소하여야 하는 운전면허의 범 위는 운전자가 거짓이나 그 밖 의 부정한 수단으로 받은 그 운전면허로 한정한다), 제18호 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관계 행 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운 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 의 범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

<u>ম</u>
1호, 제2호

- 1. (생략)
- 2.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 후 단을 위반(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 및 제3호에서 같다)한 사람이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 여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 당된 경우

3. (생략)

<신 설>

4. ~ 20. (생략) ② ~ ④ (생 략)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 제14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정차된 차 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 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 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현행과	같음)		
2.	제44조저	<u> 2항</u>	 	
			 	-

- 3. (현행과 같음)
- 3의2. 제44조의2제2항을 위반하 여 음주운전방지장치가 설치 되지 아니한 자동차등을 운전 한 경우
- 4. ~ 20. (현행과 같음)
- ② ~ ④ (현행과 같음)
- 하나에 해<u>당하는 사람은 5년</u>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44조의2에 따라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 만을 운전하여야 하는 기간 중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 동차등을 운전한 사람
 - 2.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

- 제148조의2(벌칙) ①·② (생략)
 -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 1. 혈중알코올농도가 0. 2퍼센
 트 이상인 사람은 <u>2년</u> 이상 5
 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2. · 3. (생략)
 - ④ (생 략)
-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제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생략)

<신 설>

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
니한 사람(주·정차된 차만 손
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
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
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
제148조의2(벌칙) ①・② (현행과
같음)
3
1
<u>3년</u>
2.•3.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제152조(벌칙)
1. (현행과 같음)
1의2. 제44조의2를 위반하여 음

주운전방지장치가 설치되지

	아니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
	<u>라</u>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